

束草市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995. 2. 21.

의회운영위원회

1. 審査經過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5년 2월 13일 조승남의원외 2인

나. 회부일자 : 1995년 2월 13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3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95. 2. 21)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조승남의원)

가. 제안이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위임된 사무직원의 정수를 별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속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함 (안 제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 없 음

4. 質疑 및 答辯要旨 : 없 음

5. 討論要旨 : 없 음

6. 修正案 要旨 : 없 음

7. 審査結果 :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첨 부 :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끝.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1
----------	-----

발의년월일 : 1995. 2. .

발 의 자 : 조승남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위임된 사무직원의 정수를 별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함. (안 제3조)

속초시조례 제 호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u>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한다.</u>	제3조(사무직원의 정수) <u>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u>